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제270회 임시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원발의】  
**검토보고서**



2020. 4.

경제도시위원회 전문위원

# 대구광역시달서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토보고서

2020. 4. 22.

경기도시위원회

### 1. 검토과정

- 안건명: 대구광역시달서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발의자: 박종길 의원 등 13명(배지훈, 김태형, 이신자, 김인호, 조복희, 김기열, 서민우, 박정환, 배용식, 이영빈, 안영란, 원종진)
- 발의일자: 2020. 3. 23.
- 회부일자: 2020. 4. 9.
- 검토기간: 2020. 4. 10. ~ 4. 17.

### 2. 개정이유

- 달서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의 기본이념을 정의하고 대행업체 평가결과의 활용 및 적용기준을 명확히 규정하여 청소업무의 효율성 증진과 양질의 청소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 기본이념 신설(안 제2조)
- 최종 평가결과의 확정 및 등급기준 신설(안 제18조)
- 평가결과의 통보 등 신설(안 제21조)
- 평가 결과 구 홈페이지 공개 신설(안 제22조 제4항)

### 4. 참고사항(관계법령 등)

- 「폐기물관리법 제14조」
-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비용추계서: 비대상
- 입법예고(2020. 3. 23. ~ 2020. 4. 3.) 결과: 의견 없음

## 5.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달서구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서 「평가점수」를 좀 더 구체화하고, 「평가결과의 통보와 공개」를 통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의 역량 강화와 달서구의 청소행정서비스 수준 향상에 이바지함으로 전반적인 추진방향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견이 없음.
- 다만, 집행부의 수정 의견인 개정안 제9조 제2항 일부와 제21조 제1항 및 제2항이 중복됨으로 제9조 제2항 「하단부」 삭제·수정과 평가위원회의 「약칭」 통일, 「장」 구분에 대한 사항은 반영의 필요성이 있음.  
그 외 상위법인 폐기물관리법에 규정된 사항인 개정안 제22조 제4항의 삭제 여부는 위원회 차원에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집행부 수정 의견

- 본 조례안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에 대해 기본이념을 신설하여 조례 제정의 명확한 근거 및 타당성을 확보하였고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업체의 최종 평가결과의 확정 및 등급 기준을 신설하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업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 청소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됨
- 다만, 개정안 제9조(평가의 실시)제2항 중에서 개정안 제21조(평가결과 통보 등) 제1항 및 제2항과 중복되는 내용(평가결과 10일이내 업체 통지, 평가대상 업체 이의신청 10일 이내)을 수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며, 개정안 제22조제4항은 폐기물관리법 제14조에 규정되어 있어 중복되므로 상위법령을 확인·재기재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실익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삭제를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며,  
그 밖에 개정안 제18조제1항과 같은 조 제3항, 제21조제1항과 같은 조제3항의 「평가위원회」 용어는 개정안 제12조제1항의 「평가위원회를 위원회로 한다」라는 약칭규정에 따라 「평가위원회」를 「위원회」로 수정·통일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 【 조문별 집행부 수정내용 】

개정안	수정(안)	사유
<p>제9조(평가의 실시) ① 구청장은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평가지침과 평가계획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p> <p>② 구청장은 제6조의 평가대상 업무에 대하여 대행계약 기간 내 연 1회 이상 주민만족도 평가, 현장평가 및 서류 평가를 실시하고 <u>대구광역시달서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심의 종료 후 10일 이내에 평가대상업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u></p> <p>이 경우 평가대상 업체의 장은 결과를 통지 받은 후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p>	<p>제9조(평가의 실시) ① 구청장은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평가지침과 평가계획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p> <p>② 구청장은 제6조의 평가대상 업무에 대하여 대행계약 기간 내 연 1회 이상 주민만족도 평가, 현장평가 및 서류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p>	<p>개정안 제9조제2항은 개정안 제21조(평가결과의 통보)제1항 및 제2항과 중복되는 사항으로 제9조제2항의 일부내용을 수정</p>
<p>제18조(평가의 확정) ① 평가위원회는 각 평가대상 업체의 분야별 평가점수에 대하여 제7조제1항의 평가지침에 따라 적정하게 평가되었는지를 심의하여 최종 평가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구청장에게 통보한다.</p> <p>② 제1항의 최종 평가결과는 매우우수(90점 이상), 우수(80점 이상 90점 미만), 보통(70점 이상 80점 미만), 미흡(60점 이상 70점 미만), 부진(60점 미만)의 5가지 등급으로 구분하되 점수를 병기한다.</p> <p>③ 평가위원회는 제1항의 심의결과 적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재평가를 구청장에게 요청하여야하고 재평가가 이루어진 후 평가절차를 재개한다.</p>	<p>제18조(평가의 확정) ① 위원회는 각 평가대상 업체의 분야별 평가점수에 대하여 제7조제1항의 평가지침에 따라 적정하게 평가되었는지를 심의하여 최종 평가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구청장에게 통보한다.</p> <p>② 제1항의 최종 평가결과는 매우우수(90점 이상), 우수(80점 이상 90점 미만), 보통(70점 이상 80점 미만), 미흡(60점 이상 70점 미만), 부진(60점 미만)의 5가지 등급으로 구분하되 점수를 병기한다.</p> <p>③ 위원회는 제1항의 심의결과 적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재평가를 구청장에게 요청하여야하고 재평가가 이루어진 후 평가절차를 재개한다.</p>	<p>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평가위원회」를 '위원회'로 수정</p>
<p>제21조(평가결과 통보 등) ① 구청장은 평가위원회로부터 제18조 제1항의 최종 평가결과를 통보 받으면 10일 이내에 평가대상 업체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p> <p>② 평가대상 업체의 장은 제1항의 결과를 통지받은 후 1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p> <p>③ 제2항의 이의신청을 받은 구청장은 지체 없이 평가위원회의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를 의뢰하고 평가위원회는 이의신청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이의를 심의하고 그 심의결과를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제21조(평가결과 통보 등) ① 구청장은 위원회로부터 제18조 제1항의 최종 평가결과를 통보 받으면 10일 이내에 평가대상 업체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p> <p>② 평가대상 업체의 장은 제1항의 결과를 통지받은 후 1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p> <p>③ 제2항의 이의신청을 받은 구청장은 지체 없이 위원회의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를 의뢰하고 평가위원회는 이의신청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이의를 심의하고 그 심의결과를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평가위원회」를 '위원회'로 수정</p>

<p>제22조(평가결과에 따른 조치사항) ④  <u>구청장은 통보 받은 제18조 제1항의 최종 평가결과를 달서구 홈페이지에 6개월 이상 공개하여야 한다.</u></p>	<p>제22조(평가결과에 따른 조치사항) ④  <u>&lt;삭제&gt;</u></p>	<p>폐기물관리법 제14조에 규정된 사항으로 중복되므로 삭제</p>
<p>제6조 앞에 “제2장 평가절차”를 삭제하고, 제7조 앞에 “제2장 평가절차”를 삽입한다.      제11조 앞에 “제3장 위원회 구성”을 삭제하고, 제12조 앞에 “제3장 위원회 구성”을 삽입한다.      제18조 앞에 “제4장 평가결과의 활용”을 삭제하고, 제20조 앞에 “제4장 평가 결과의 활용”을 삽입한다.</p>	<p>장 구분 정리</p>	

#### \* 참고자료: 관련법령

# 【 관계법령 】

## 폐기물관리법

- 제14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개정 2007. 8. 3., 2010. 7. 23., 2013. 7. 16.>
- ②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제1항에 따른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7. 8. 3., 2010. 7. 23., 2013. 7. 16.>
- ③ 제1항 본문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46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 신고를 한 자(이하 "폐기물처리 신고자"라 한다)는 생활폐기물 중 폐지, 고철, 폐식용유(생활폐기물에 해당하는 폐식용유를 유출 우려가 없는 전용 탱크·용기로 수집·운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수집·운반 또는 재활용할 수 있다. <신설 2010. 7. 23., 2013. 7. 16.>
- ④ 제3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자는 수집한 생활폐기물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운반할 수 있다. <신설 2013. 7. 16.>
1.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른 제품·포장재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 중 제조·수입하거나 판매한 제품·포장재로 인하여 발생한 폐기물을 직접 회수하여 재활용하는 자(재활용을 위탁받은 자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를 포함한다)
  2. 제25조제5항제5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폐기물 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은 자
  3. 폐기물처리 신고자
  4.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
- ⑤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처리할 때에는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의 종류, 양 등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수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 종량제(從量制) 봉투 또는 폐기물임을 표시하는 표지 등(이하 "종량제 봉투등"으로 한다)을 판매하는 방법으로 징수하되, 음식물류 폐기물의 경우에는 배출량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부과하는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7. 8. 3., 2010. 7. 23., 2012. 6. 1., 2013. 7. 16.>
- 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제5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하여 수수료를 부과·징수하려는 경우에는 제45조제2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수료 산정에 필요한 내용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5조제2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3. 7. 16.>
- ⑦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량제 봉투등의 제작·유통·판매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0. 7. 23., 2013. 7. 16.>
- ⑧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신설 2010. 7. 23., 2013. 7. 16., 2014. 1. 21., 2015. 1. 20.>
1.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원가를 계산하여야 하며, 최초의 원가계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에서 규정하는 원가계산용역기관에 원가계산을 의뢰하여야 한다.
  2.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에 대한 대행실적 평가기준(주민만족도와 환경미화원의 근로조건을 포함한다)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평가기준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행실적 평가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전문가 등으로 평가단을 구성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3. 제2호에 따라 대행실적을 평가한 경우 그 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 인터넷 홈페이지에 평가일부터 6개월 이상 공개하여야 하며, 평가결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정지, 대행계약 해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내용을 계약일부터 6개월 이상 해당 지방자치단체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5. 제4호에 따른 대행계약이 만료된 경우에는 계약만료 후 6개월 이내에 대행비용 지출내역을 6개월 이상 해당 지방자치단체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6.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법인의 대표자를 포함한다)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대행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 가. 「형법」 제133조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 나. 「형법」 제347조, 제347조의2, 제356조 또는 제357조(제347조 및 제356조의 경우 「특정경제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벌금형의 경우에는 300만원 이상에 한정한다.)
  7.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 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과 관련하여 제6호 각 목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은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계약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 ⑨ 환경부장관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의 대행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에 관한 기준의 준수 여부 등을 점검·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의 자료 제출 및 시정조치 요구를 받은 해당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0. 7. 23., 2013. 7. 16., 2014. 1. 21. >